

패스 감정평가관계 법규 수정사항 1006

p 40 흐름도

표준지선정 및 조사평가의뢰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제출(시군구청장, 20이상개시)

p 77 흐름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선정 및 조사산정의뢰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제출
(시군구청장, 20이상개시)

p 44 맨위줄

감정평가업자가 -> 감정평가법인등이

p 77 흐름도

보고서 제출 우측 : 한국부동산원 추가

p 77 흐름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4/30까지) 아래 : “소유자개별통지 MUST” 추가

p 350 기출문제 정답 ㉓ ----> 정답 ㉑㉓

국유재산법 수정사항

p403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예외(기귀분류개사학)

- 6) 사회기반시설 축조 (협의(중앙장), 승인(총괄청))
- 7) 학교시설 증축, 개축 (협의(총괄청, 중앙장), 승인(교육부장))

p 417

실력다지기 사용수익 요약

- 7. 평가: 토지(개공), 개주, 공주, 시가표준, 기타(시가표준, 시가표준없음 1개법인등, 3년 유효)
- 11. 사용료감면 : (통행불편 등 토지 100㎡ & 1천만원이하 :30% , 30㎡ & 100만원이하 :30%
보수비용 (20년경과, c등급이하, 천제지변))
- 12. 사용허가 갱신: MAX [산출사용료, 갱신직전연도 사용료×해당 연도 재산가액/갱신직전연도 재산가액]
- 13. 가산금: 관리소홀, 사용료 넘지 않는 범위, 사용허가시 정함

p 440

위 박스 삭제(중복됨)

p 448

구분	내용
공유재산 특례	- 유사한 제한 ×, - 가격제한 × - 교환금액: 규정(대장 3천 이상 2개 법인등 , 3천 미만 1개 법인등)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or 1개 이상 법인등

건축법 수정사항

P 510

실력다지기 **허가권자**

2. 도시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제외**)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

제한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제한기간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	

P 519

제한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제한기간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	

P 523

-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관, 농, 자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단,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제외)

P 605

-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조경), 제55조(건), 제56조(용), 제58조(대지안공지), 제60조(높이) 및 **제61조(일조높이)**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

P 611

위반건축물(허가권자의 조치)	
사유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③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지적법 수정사항

P 640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지적측량 의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적측량 의뢰×)

P 640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지적측량 의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적측량 의뢰×)

p 119 규칙 제18조의2(감정평가업자의 고용인 신고) 제1항 제3항에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등

p 273 대상지역

대상지역	유보용도, 보전용도 지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 개정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P 465 정리

1) 1년 한번이상 ->매년

p 732

제58조 제1항 제1호(관할위원)-> 제1호(관할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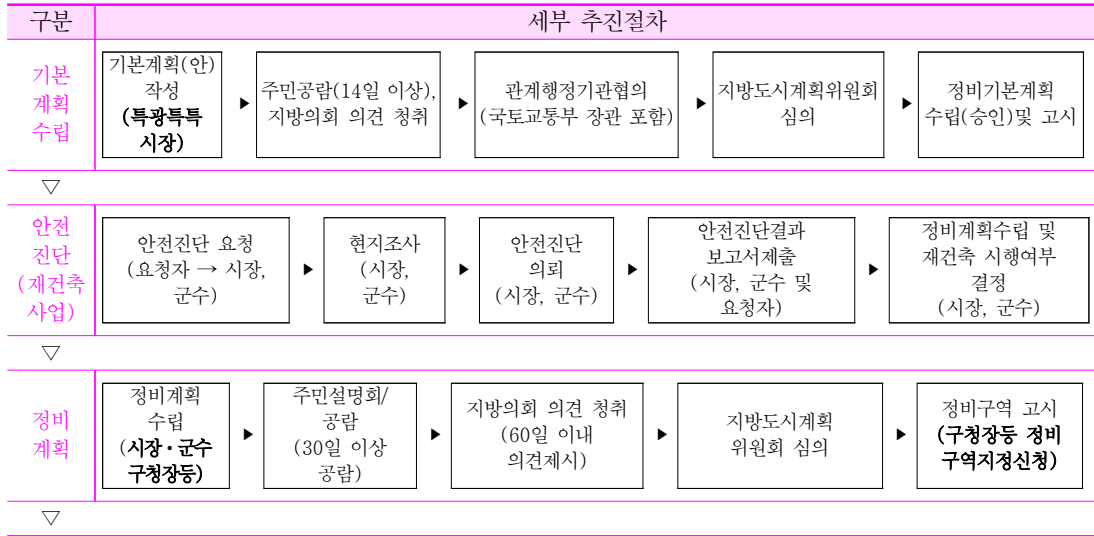
p 742 표 제일 아래

임차권 : 차임 -> 범위, 차임

p 764 표 제일 아래

임차권	차임 임차권의 목적인 범위(전부, 일부)	변제기, 이자
		차임의 선지급, 지급시기 (임차)보증금, 존속기간 임차권양도, 임차물전대에 대한 임대인 동의,

p 774 표



p783, p882 표

4.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의무(시장군수등 → 토지구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정비사업비 100분의10 이상 늘어남
 - 조합원 분담규모 100분의20 이상 늘어남
 -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15일내 시장군수등에 요청

p905 제118조 삽입 [제121조(청문) 앞]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구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사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개정 2017. 8. 9.>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⑧ 제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